

2022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

강원도는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미래지속형 기업 육성을 위한 『2022년도 강원도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4. 1.

강 원 도 지 사

1. 선정규모

- 백년기업 : 5개사 내외
- 유망 중소기업 : 50개사 내외
 - 신규인증기업 : 40개(인증 유효기간 : 5년)
 - 재인증기업 : 10개(인증 유효기간 : 3년)
- ※ 재인증기업 :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간 만료 또는 만료 예정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1회에 한해 재인증 신청 가능

2. 신청대상

【백년기업】

- 본사 및 주사업장(공장) : 도내 소재 중소기업
- 업력 : 도내 20년 이상 (제조업 : 공장등록기준 / 기타 : 사업자등록기준)
- 업종 : 전 업종
- 상시고용인원 : 10명 이상
-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【유망중소기업】

- 본사 및 주사업장(공장) : 도내 소재 중소기업
- 업력 : 도내 2년 이상 (제조업 : 공장등록기준 / 기타 : 사업자등록기준)
 - 벤처기업, IT기업, 이전기업을 도내 1년 이상
- 업종 : 제조업, 제조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관련업, 건설업
 - 제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분류 기준
 - 제조관련서비스업, 지식정보관련업, 건설업 (별표 1~2 참조/ 해당업종 등록(허가)증 제출)
- ※ 단, 재인증 신청 기업은 위 자격요건과 최초 선정당시 업종을 유지해야 함.
- 상시고용 : 5명 이상
- 인증신청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【인증신청이 제한되는 기업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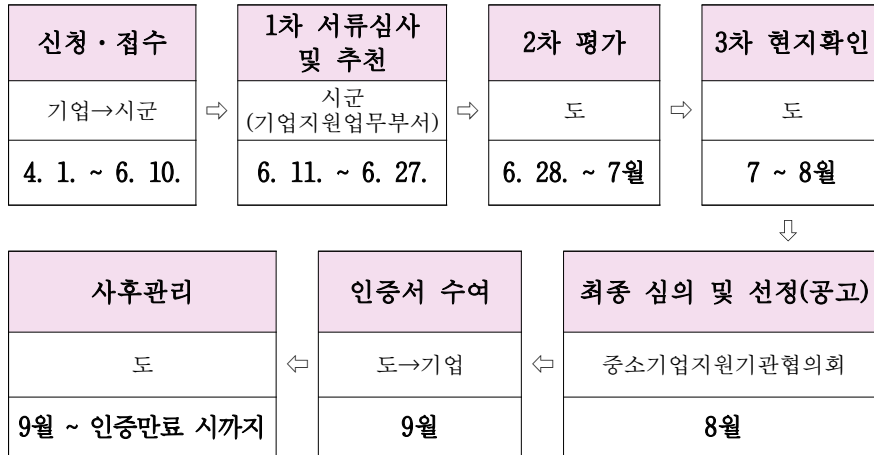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- 제조업인 경우 전업률이 매년도 매출액 기준 30% 미만인 기업
- 자본잠식 및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산업재해, 임금체벌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

3. 신청기간 및 접수

- 신청기간(기업→시군) : 2022. 4. 1.(금) ~ 6. 10.(금), 평일 09:00~18:00
 - ※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며, 신청서 등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. 다만, 지역근로자의 고용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(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)는 시군에서 확인 후 반환합니다.
- 접 수 처 :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업무부서
- 추천기한(시군→도) : 2022. 6. 27.(월)까지
- 신청서류 : 「백년기업 신청서」, 「유망중소기업 신청서」 참조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

4. 심사절차 및 일정

○ 선정절차 및 일정 : 기업의 신청 및 시군 확인 등을 통해 추진



○ 시군 추천 기준점수(평가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)

- 백년기업 60점 이상, 유망중소기업 50점 이상

5. 선정 시 지원내용

○ 인증서 및 현판 제공

○ 강원도 유망중소기업 「심볼마크」 사용권 부여

○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백년 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명단 게재

○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우대 지원

※ 당해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에 따름

○ 강원도의 수출, 판로, 마케팅 등 각종 시책 지원 및 공모 시 우대

○ 강원도지방세세무조사 규칙 제14조에 의거 3년간 세무조사 유예

○ 중소벤처기업청, 강원도경제진흥원, 강원신용보증재단, 중소기업진흥공단, 한국무역협회, 한국표준협회, 한국은행 등 기관별 인센티브 지원 우대

6. 인증 취소 및 인증서 재교부

○ 인증 취소 사유

-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
-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
- 전업 또는 폐업, 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
- 신청내용이 허위이거나 추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
- 불법·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 등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
○ 인증서 재교부 사유

- 상호명 변경 또는 강원도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
-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, 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(단, 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)

7. 기타사항

○ 백년기업과 유망중소기업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.

○ 접수·심사상황 등에 따라 선정기간, 선정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기업지원과(033-249-2757) 및 시군 접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시군 접수부서	문 의 처	시군 접수부서	문 의 처
춘천시 기업과	250-4172	영월군 경제고용과	370-2649
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	737-2973	평창군 일자리경제과	330-2745
강릉시 기업지원과	640-5209	정선군 전략산업과	560-2352
동해시 투자유치과	539-8764	철원군 경제진흥과	450-4937
태백시 일자리경제과	550-2397	화천군 지역경제과	440-2351
속초시 일자리경제과	639-2376	양구군 경제일자리과	480-2181
삼척시 경제과	570-3365	인제군 경제협력과	460-2384
홍천군 일자리경제과	430-2811	고성군 경제투자과	680-3737
횡성군 기업경제과	340-2043	양양군 경제에너지과	670-2690

강원도 백년기업·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특전(인센티브)

【강원도】

① 기업의 대외 이미지 제고 및 경영개선(기업지원과·세정과·일자리정책과)

- 도지사 인증서(한글판, 영문판) 및 현판 수여
- 강원도유망중소기업 「심볼마크」 사용권 부여
- 각급 기관 등에서 제품구매 시 우선 구매 홍보
- 강원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
- 강원도 일자리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

② 자금분야(기업지원과)

-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(※ 당해연도 자금계획에 따름)
 - 경영안정자금(운전자금) : 일반기업(지원한도 5억원 / 이차보전 2%)
 - ⇒ 한도 및 이차보전을 우대 : '22년 기준 한도 8억원 / 이차보전 3%
 - 특수목적자금(시설자금) : 일반기업(지원한도 8억원 / 고정금리 1.5%)
 - ⇒ 한도 우대 : '22년 기준 백년기업(한도 30억원), 유망중소기업(한도 20억원)
- 서울보증보험 : 이행보증보험 등 보증보험료 10% 할인 및 한도 우대

③ 판로분야(기업지원과)

-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
- 토털마케팅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
 - (역량강화) 경영·기술·마케팅 컨설팅, 시제품 제작, 인증마크 획득
 - (홍보전략) 디자인 개발, 홍보영상물·홍보물·포장재 제작
 - (판로개척) 온라인마케팅, 전시박람회 참가, 대형유통업체 입점지원

④ 수출지원분야(중국통상과·일본구미주통상과)

- 수출 활성화 및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 시 우대
 - (수출활성화) 인증, 홍보물, 디자인, 통번역, 물류비 등 지원
 - (해외마케팅) 수출상담회, 시장개척단,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
- ※ 강원도 수출지원사업 : <https://tradesupport.gwd.go.kr/portal/community/brochure/html>

【유관기관】

①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

-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우대

② 강원도경제진흥원

- 각종 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및 기준 완화
 - * 토털마케팅 지원사업, 해외규격인증,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등 수출지원사업
- 강원더몰 입점평가 시 점수 부여(상세페이지 제작지원)

③ 강원신용보증재단

- 특별보증 심사로 적용, 일반보증 대비 심사 완화
- 보증료 연 1.0%(고정) 적용
 - ※ 일반기업 : 최대 2.0%, 평가등급 및 이용기간별 차등

④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

-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우대(자체기술사업서등급 충족 시)
- 혁신바우처사업 심사 시 가점 부여(검토중)

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

- 해외 전시회 등 지자체 단위 사업신청 시 가점 부여
- KITA 무역진흥기금 심사, 무역의 날 유공자 선정 시 가점 부여

⑥ 한국표준협회 강원지부

- KS인증 및 ISO인증 지원서비스
- 으뜸상품(제품의 기술우수성 인정)인정제도 신청시 가점부여
- 국가품질상, 대한민국 신기술 으뜸상, 명품브랜드 시행시 우대
- 중소기업 대상, 모형개발 및 보급시 우선권 부여
- 품질 및 기술관련 무료교육 및 컨설팅 시 우선 신청권 부여
-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 신청 시 우선심사권 부여

⑦ 도내 세무서

- 기업의 경영 악화 시 국세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
-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적합 시 우대

■ [별표 1]

제조업 관련 서비스업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업종 증빙서류
E.수도,하수 및 폐기물처리, 원료재생업	37	하수, 폐수 및 분뇨처리업	등록/허가증
	381	폐기물 수집, 운반업	
	3821	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	
	3822	지정 폐기물 처리업	
	3823	건설 폐기물 처리업	
	383	해체, 선별 및 원료재생업	
	39	환경 정화 및 복원업	
H.운수 및 창고업	491	철도 운송업	등록/허가증
	492	육상여객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	
	493	도로화물 운송업(개인,1인기업 제외)	
	501	해상운송업	
	502	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	
	521	보관 및 창고업	
	52913	물류터미널 운영업	
	5294	화물취급업	
	5299	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	
N.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	74	사업시설관리 및 조정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	76390	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	
S.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	951	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	등록/허가증
	95211	자동차 종합수리업(1,2급공업사)	

■ [별표 2]

지식정보업 및 기타업종

구 분	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	대 상 업 종	업종 증빙서류
통신판매업	47911	전자상거래업	등록/허가증
	47919	기타 통신판매업	
영상산업	59111	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등록/허가증
	59112	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	59113	광고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
정보처리업	58211	온라인·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등록/허가증
	58219	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58221	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58222	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
	62010	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
	62021	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
	62022	컴퓨터시설 관리업	
	63111	자료 처리업	
	63112	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	
	63120	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	
연구 및 개발산업	7011	자연과학 연구개발업	등록/허가증
	7020	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
엔지니어링 산업	721	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	등록/허가증
	729	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
경영상담산업	71531	경영컨설팅업	등록/허가증
디자인산업	7320	전문디자인업	등록/허가증
광고업	71310	광고 대행업	등록/허가증
	71393	광고물 작성업	
기타 업종		건설업 등	등록/허가증